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아름다운실버배당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

2. 변경내용 : 투자한도 변경 및 해지사유 변경

3. 대비표

- 집합투자규약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6-1.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6-1. 주식. **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**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 1 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①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(신설)	①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**3.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** **4.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**
부 칙	(신 설)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2. 투자한도 변경 및 해지사유 변경

- 투자설명서/간이투자설명서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 2 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7-1.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	7-1. 주식, **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**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